

# 인권존중의 법질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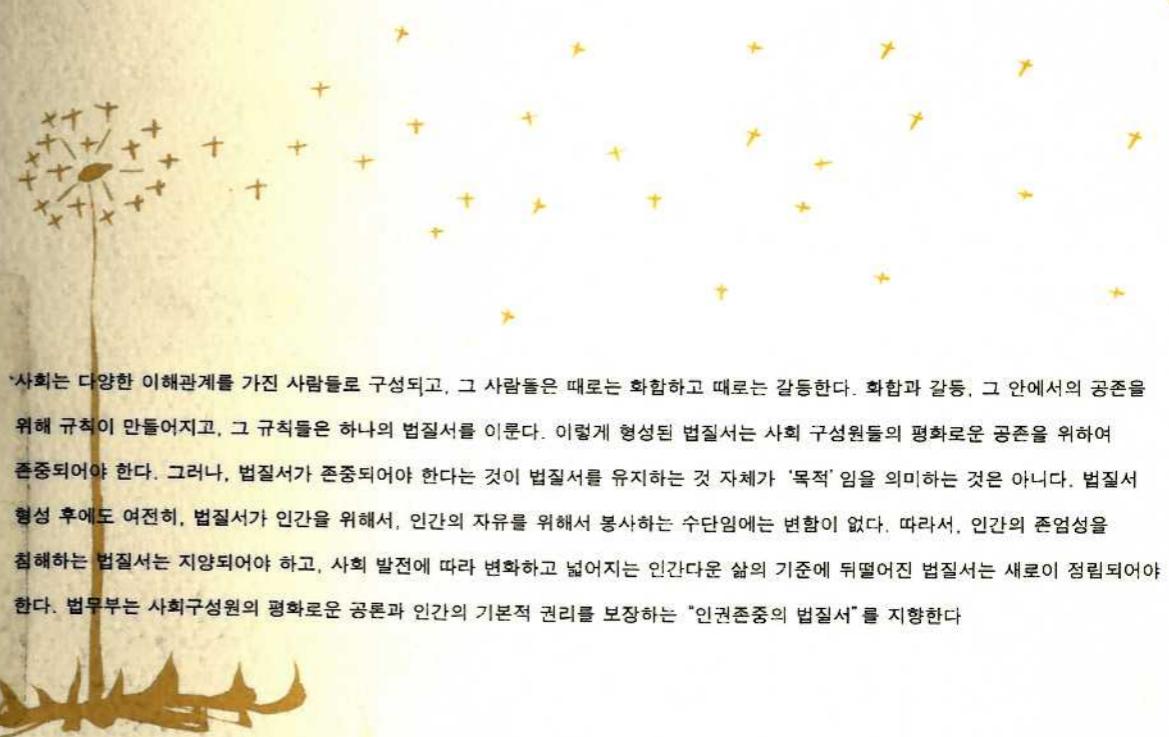
인권존중의 법질서

법무부 정책목표와 과제

인권정보자료실  
G1.99

법무부가 이 모든 일들을 왜, 무엇을 위해 하는가라는 질문을 떠올리면서 저는 발전하는 사회의 속도, 바로 그만큼 주변화되고 있는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생긴 다양한 갈등과 복잡하게 얹힌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긴장관계는 어찌보면 필연적입니다. 문제는 이들 사이의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막혀있을 때, 또 이 갈등과 긴장이 대화와 타협으로 조절되고 풀리는 것이 아니라 획일적으로 배제되고 강제될 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주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주변화는 사람 사이에, 혹은 사회 부분 사이에 불균형을 가져오고, 사회는 결국 불균형 발전의 간극을 메우는 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루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사회의 법과 제도를 다름에 있어 사람을 주변이 아닌 중심에 놓고자 합니다. "인권존중의 법질서"라는 정책목표는 이를 위한 법무부의 새로운 다짐입니다.

- '책을 내면서' 중에서 -



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고, 그 사람들은 때로는 화합하고 때로는 갈등한다. 화합과 갈등, 그 안에서의 공존을 위해 규칙이 만들어지고, 그 규칙들은 하나의 법질서를 이룬다. 이렇게 형성된 법질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질서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질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목적'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질서 형성 후에도 여전히, 법질서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 봉사하는 수단임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법질서는 지양되어야 하고, 사회 발전에 따라 변화하고 넓어지는 인간다운 삶의 기준에 뒤떨어진 법질서는 새로이 정립되어야 한다. 법무부는 사회구성원의 평화로운 공존과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인권존중의 법질서"를 지향한다

### 정 책 목 표

## 인권존중의 법질서

사회 발전에 부합하는 법질서 정립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 평등 보장  
공정하고 투명한 법집행  
상호존중의 법률문화 형성

### 8 대 정 책 과제

1. 사회 발전과 인권존중의식을 반영한 법령의 연구 및 개정
2.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외국인정책의 수립
3. 법률서비스기능의 강화
4. 사회적 약자의 권리 향상
5.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6. 검사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립
7. 범법자 사회복귀 및 재범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
8. 사회적 협의의 중요성 인식 확산과 법률문화 향상

### 추 진 전략

법무부 전문행정기관화  
열린 법무행정

인권존중의 법질서



# 책을 내면서

참여정부 1년을 마무리짓는 시점에, 법무부는 정책보고서로 이 책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해 상반기에 총괄적인 정책자문기구로서 법무부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수립과 실행을 본격화하여 왔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해에는 검찰과 관련한 정책과제들이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선논의가 진행되어왔고 그간의 노력이 반영되어 지난해 12월 30일 직급제폐지 등을 포함하여 검찰청법이 개정됨으로써 초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 관련 정책뿐 아니라 부처 전 분야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을 안정적이고 차분하게,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정하고 과제들을 설정하여 장단기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국민들께 직접 알려서 국민들의 의견과 비판을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고쳐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생각에서 법무부는 연간 정책보고서를 구상하고, 법무부 정책의 큰 그림과 세부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법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업무수행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인권존중의 법질서』라는 제목의 이 책을 준비하여 왔습니다.

법무부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충돌, 그리고 그 조정과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갈등과 충돌의 현장에서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검찰업무, 죄지은 자들을 사회 안에서 혹은 사회로부터 일정기간 격리시켜 성찰과 재교육의 기회를 갖게 하는 보호·교정업무, 지구적 차원의 인구 이동 길목에 있는 출입국관리업무를 포괄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사회질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령을 연구하고 조율하는 일을 합니다.

법무부가 이 모든 일들을 왜, 무엇을 위해 하는가라는 질문을 떠올리면서 저는 발전하는 사회의 속도, 바로 그만큼 주변화되고 있는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생긴 다양한 갈등과 복잡하게 얹힌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긴장관계는 어찌보면 필연적입니다. 문제는 이들 사이의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막혀있을 때, 또 이 갈등과 긴장이 대화와 타협으로 조절되고 풀리는 것이 아니라 획일적으로 배제되고 강제될 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주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주변화는 사람 사이에, 혹은 사회 부분 사이에 불균형을 가져오고, 사회는 결국 불균형 발전의 간극을 메

우는 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루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사회의 법과 제도를 다룸에 있어 사람을 주변이 아닌 중심에 놓고자 합니다. "인권존중의 법질서"라는 정책목표는 이를 위한 법무부의 새로운 다짐입니다.

『인권존중의 법질서』에는 법무부의 정책목표, 법무, 검찰, 보호, 교정 분야를 포괄하는 8대 정책과제와 구체적 추진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이를 만들어내는 작업은 우리가 살고 싶은, 우리가 기꺼이 속하고 싶은 사회의 모습을 그려내는 일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법무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현재의 조건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은 법무부 각 실국이 우리 사회의 발전방향과 법무부의 미래를 고민하고 서로의 유기적 관계와 역할을 자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다양성의 조화가 실현되는 사회에서는 사회적 약자가 짓눌리거나 다수에 의해 소수가 배제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법이 다수와 소수, 상이함 사이를 누벼가며 공정한 소통의 질서를 이루는 역할을 하게 될 때 진정한 법치주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인권존중의 법질서'는 인내심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사회는 오랜 기간에 걸쳐 차분하게 다져진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다기보다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정치적 민주주의를 정착시켜냈습니다. 여기에는 폭발적 가능성이라는 긍정적 힘이 있지만, 관용과 이해와 기다림의 미덕은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관용과 이해, 상호존중의 태도를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법무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하되 차이에 대한 관용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상호존중이 흐르는 사회문화를 만드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기꺼이 살고 싶은 사회는 조금씩 가까워질 것입니다.

끝으로, 이 책을 기획하고 추진한 정책기획단과 정책과제의 내용을 정리하고 수정하는데 참여하신 정상명 차관을 비롯한 법무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기획부터 교정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애쓴 이병래, 양난주 두 정책보좌관의 수고가 이 책의 발간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인권존중의 법질서』는 법무부의 공개적인 약속이 되었습니다. 참여정부의 법무부에서 이 약속이 성실히 지켜지고 풍요롭게 무르익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낌없는 비판과 힐책으로 법무부의 약속지킴을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정책목표와 8대 정책과제, 추진전략

10

## I. 정책목표

11

## II. 정책과제

15

### 1. 사회 발전과 인권존중의식을 반영한 법령의 연구 및 개정

18

- 1.1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도록 소관 법령 개폐 및 제정
  - 민사법 제·개정
  - 형사법령의 정비
  - 경미범죄의 비범죄화 및 규제의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 1.2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령 및 제도 정비
- 1.3 남북협력증진 및 통일에 대비한 법령 정비 및 연구활동 강화

19

30

35

### 2.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외국인정책의 수립

38

- 2.1 종합적인 외국인정책의 수립
- 2.2 국적제도의 개선
- 2.3 시증발급 및 입국심사절차의 개선 등 출입국관리 업무의 선진화

39

41

43

### 3. 법률서비스기능의 강화

46

- 3.1 국가소송, 행정소송 충실향
- 3.2 통상업무 지원, 국제조약 등 국제관계업무의 전문성 확충
- 3.3 체제전환국 법령정비 지원 등 법률문화교류사업 추진
- 3.4 법률구조의 확대

47

51

53

55

### 4. 사회적 약자의 권리 향상

57

- 4.1 형사절차에서 여성, 장애인 등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법령 개정 및 절차 개선
- 4.2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의 특성에 맞는 교정시설 및 교화프로그램 마련

58

62

### 5.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65

- 5.1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개선
- 5.2 부정부패사건 등에 대한 효율적 대처
- 5.3 인권옹호 및 공정한 수사관행 정착을 위한 검찰업무지침 정립
- 5.4 공안기능 조정 및 공안사건 처리기준 재정립
- 5.5 과학수사 정착을 위한 연구 강화

66

68

72

74

76

### 6. 검사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립

79

- 6.1 수사지휘 및 인권옹호기능 강화를 위한 검찰 조직개편
- 6.2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찰 인사제도 확립

80

82

### 7. 법법자 사회복귀 및 재범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

85

- 7.1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개선
- 7.2 교정시설의 현대화 및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
- 7.3 보호관찰의 선진화로 재범방지역량 강화
- 7.4 소년보호교육기관 청소년범죄 대처시스템 강화

86

89

92

95

### 8. 사회적 협의의 중요성 인식 확산과 법률문화 향상

97

- 8.1 사회적 협의 인프라 구축과 지원
- 8.2 법률정보 확산과 정책홍보 강화
- 8.3 법치주의·인권에 대한 대내외적 교육의 강화

98

100

103

## III. 추진전략

106

### 1. 법무부 현황과 문제점

108

### 2. 법무부 전문행정기관화

114

### 3. 열린 법무행정

121

#### IV. 2003년 법무부 개혁의 성과

##### 1. 사회 발전과 인권존중의식을 반영한 법령의 연구 및 개정

-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법령·제도 정비
-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
- 구속피고인 무죄 등 선고시 즉시 석방제도 시행
- 공안사법 및 공안관련사법 등에 대한 가석방 심사시 준법서약제도 폐지
- 불구속 수사 확대
-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 정비 지원

##### 2.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외국인정책의 수립

-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출입국관리법령 정비
- 중국동포 입국절차 개선
- 외국인 지문날인제도 개선
- 난민인정확대
- 혼인귀화절차 개선

##### 3. 법률서비스기능의 강화

- 협정비공무사건 피해보상 사전지급절차 도입
- 법무부 정보공개청구제도 개선
- 통상법률 지원 활성화
- 재외동포에 대한 법적 지원 확대
- 인터넷 법률상담 강화
- 법률구조대상자 확대

##### 4. 사회적 약자의 권리향상

- 수용시설 출장법률상담제 실시
- 군산교도소에 장애인전담 직업훈련시설 설치 운영
- 여성수용자 유급 보건휴역 실시
-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 5.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 기소 즉시 기록 열람·등사의 전면 허용

124

125

128

130

132

134

항고심사회 제도 시범 시행

검찰수사 특별모니터링제 시행

검찰·국세청 공조협의체 구성

##### 6. 검사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립

-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검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규정으로 개정
- 검사 직급 폐지 및 단일호봉제 도입
- 검찰인사위원회 운영 개선

##### 7. 범법자 사회복귀 및 재범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

- 교정시설 현대화 및 의료환경의 개선
- 수용자 교육 및 직업훈련의 확대
- 수용자 원격화상접견 확대 등 처우 개선
- 출소자 사회정책 지원
- 보호행정 관련 법령·제도 정비
- 보호소년상담조사제 실시 및 소년원 특성화교육의 다양화·전문화
- 보호관찰 협력사업 확대와 과학적 관리시스템의 도입
- 보호감호제도 개폐 검토

##### 8. 사회적 혐의의 중요성 인식 확산과 법률문화 향상

- 법무연수원 인권교육 강화
- 법무부 국제인권강좌
- 공안부 검사 세미나 <화요강좌> 실시
- 세계인권선언기념주간 법무부 행사

#### V. 2003년 정책위원회 활동 및 의결내용

##### 1. 목적

##### 2. 구성

##### 3. 활동내용

135

137

141

143

144

144

146



### 정책 목표

## 인권존중의 법질서

사회 발전에 부합하는 법질서 정립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 평등 보장  
공정하고 투명한 법집행  
상호존중의 법률문화 형성

### 8 대 정책 과제

1. 사회 발전과 인권존중의식을 반영한 법령의 연구 및 개정
2.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외국인정책의 수립
3. 법률서비스기능의 강화
4. 사회적 약자의 권리 향상
5.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6. 검사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립
7. 범법자 사회복귀 및 재범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
8. 사회적 협의의 중요성 인식 확산과 법률문화 향상

### 추진 전략

법무부 전문행정기관화  
열린 법무행정

# 정책 목표



## ● 지향하는 가치

### 인권존중의 법질서

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고, 그 사람들은 때로는 화합하고 때로는 갈등한다. 화합과 갈등, 그 안에서의 공존을 위해 규칙이 만들어지고, 그 규칙들은 하나의 법질서를 이룬다. 이렇게 형성된 법질서는 사회구성원들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질서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질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목적’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질서 형성 후에도 여전히, 법질서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 봉사하는 수단임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법질서는 지양되어야 하고, 사회 발전에 따라 변화하고 넓어지는 인간다운 삶의 기준에 뒤떨어진 법질서는 새로이 정립되어야 한다.

법무부는 사회구성원의 평화로운 공존과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인권존중의 법질서”를 지향한다.

## ● 구체적 목표

인권보장의 수준은 사회의 발전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다. 정치, 경제 등 사회 제반 분야의 발전이 인권보장의 기초를 이룬다는 점에서 그렇고, 또 사회의 발전을 기초로 인권보장의 확대를 위한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선진사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 발전에 부합하는 법질서 정립”은 “인권존중의 법질서”의 기초라 할 수 있다. 인권보장의 확대라는 관점에서의 사회 발전은 사회 전체의 종합적 발전만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삶의 질적 향상을 내포한다. 이는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도 사회 발전을 공동으로 향유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 평등 보장”은 선진사회로 가는데 있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사회 발전에 부합하는 법질서가 정립되고,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그 법집행이 형평을 잃는다면 “인권존중의 법질서”는 실현될 수 없다. “공정하고 투명한 법집행”은 합의된 법질서 실현의 방법이자 필수적 구성요소다. 하지만, 인권존중의 법질서는 법집행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공존하는 것이고, 이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인권존중의식이 스며들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과 제도의 정비, 공정한 법집행은 사회구성원들 의식 밑바닥에 스스로를,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따라서, 법무부는 “인권존중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목표를 추구한다.

### 사회 발전에 부합하는 법질서 정립

사회는 급격히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정당했던 법률조차도 변화된 사회에서는 국민의 권리 실현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법무부는 민사법, 형사법 등 많은 법령의 주무부서인 한편, 출입국이나 교정행정을 담당하는 법집행기관인바, 사회 발전에 부응하여 소관 법령 및 행정 관련 제도를 적시에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장과 권리실현에 적합한 법질서를 정립하고자 한다.

###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 평등 보장

기본적 인권은 다수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를 차별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차이와 특수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차이와 특수성을 간과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차이와 특수성을 배려한 법령 정비와 법집행을 통해 법 앞의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고자 한다.

### 공정하고 투명한 법집행

법무부 및 검찰의 법집행은 대부분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잘못된 법집행은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형평성을 잃은 법집행은 곧바로 차별을 가져온다. 법무부는 불법과 부패에 대한 법집행에 있어서 원칙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그 법집행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고자 한다.

### 상호존중의 법률문화 형성

인권존중의 법질서는 단순히 지켜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에 의한 사회적 합의 이자 규범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사회구성원들이 평화적으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사회변화에 조응하는 법제도 정비, 공정한 법집행과 함께, 사회구성원 스스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사회적 협의과정과 상호존중의 법률문화 형성이 필수적이다. 법무부는 다원화된 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평화적 공존을 위한 상호존중 법률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 정책 과제



# 정책과제

순번	정책과제	구체적 과제
1	사회 발전과 인권존중의식을 반영한 법령의 연구 및 개정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도록 소관 법령 개폐 및 제정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령 및 제도 정비 남북협력증진 및 통일에 대비한 법령의 정비 및 연구활동 강화
2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외국인정책의 수립	종합적인 외국인 정책의 수립 국적제도의 개선 사증발급 및 입국심사절차의 개선 등 출입국관리업무의 선진화
3	법률서비스기능의 강화	국가소송, 행정소송 충실향화 통상업무 지원, 국제조약 등 관련 국제관계업무의 전문성 확충 체제전환국 법령정비 지원 등 법률문화교류사업 추진 법률구조의 확대
4	사회적 약자의 권리 향상	형사절차에서 여성, 장애인 등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법령 개정 및 절차 개선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의 특성에 맞는 교정시설 및 교화프로그램 마련

“인권존중의 법질서” 및 네 가지 구체적 정책목표의 실현을 위해 법무부가 추진할 8대 정책과제를 선정하였다. 정책과제들은 각 실국별로 진행될 구체적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과제들은 정책목표를 기본정신으로 하여 입안되었고, 모든 정책과제의 계획과 실천은 정책목표의 정신에 입각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순번	정책과제	구체적 과제
5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불기소처분 대한 불복방법 개선 부정부폐사건 등에 대한 효율적 대처 인권옹호 및 공정한 수사관행의 정착을 위한 검찰업무지침 정립 공안기능의 조정 및 공안사건 처리기준의 재정립 과학수사 정착을 위한 연구 강화
6	검사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립	수사자휘 및 인권옹호기능 강화를 위한 검찰 조직개편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찰 인사제도 확립
7	법법자 사회복귀 및 재범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	수용자 교정, 교화 프로그램의 개선 교정시설의 현대화 및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 보호관찰의 선진화로 재범방지역량 강화 소년보호교육기관 청소년범죄 대처시스템 강화
8	사회적 협의의 중요성 인식 확산과 법률문화 향상	사회적 협의의 인프라 구축과 지원 법률정보 확산과 정책홍보 강화 법치주의·인권에 대한 대내외적 교육의 강화

# 1

## 사회 발전과 인권존중의식을 반영한 법령의 연구 및 개정

**구체적 과제 ①**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도록 소관 법령 개폐 및 제정

**구체적 과제 ②**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령 및 제도 정비

**구체적 과제 ③** 남북협력증진 및 통일에 대비한 법령 정비 및 연구활동 강화

### 구체적 과제 ①

####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도록 소관 법령 개폐 및 제정

##### ◎ 민사법 제·개정

###### 추진목표

- 민사법 분야의 국제 입법동향 및 관련 협약의 제·개정 추이를 반영하여 국제화시대, 21세기 디지털시대에 적합하게 민법 및 상법의 개정, 통합도산법 및 상업등기법의 제정을 추진
- 사회 변화에 부응하여 적시에 법령이 제·개정될 수 있는 법령 정비 시스템의 구축

###### 현황

민사법 분야의 법 개정은 전문가들에 의한 장기간의 논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문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각 법률의 담당자(현재 검사 위주로 편성)가 찾은 인사이동으로 단기 근무를 하고 있어서 논의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위원회 도를 두고 있으나, 이들은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 급여도 충분하지 않아 해당 법 분야의 장기적인 연구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담당검사들의 경우에도 개정안 마련중에 수차례 인사이동이 이루어져 연구의 계속성과 전문 역량의 축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제·개정 논의가 진행중인 통합도산법 및 민법(제산편) 등의 경우, 위와 같은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민법의 경우 1999년 2월부터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2004년 8월에 개정안 마련을 완료할 예정인데, 그 기간중에 세 번이나 담당 검사가 바뀌었다. 통합도산법의



경우에도 1998년 2월 법 제정작업을 시작한 후 세 차례의 인사이동이 있었다.

#### ■ 현재 민사법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 현황

· 민법 (재산편)	검사 1명, 전문위원 1명	· 통합도산법	검사 1명, 전문위원 0.5명
· 민법 (기족편)	검사 1명, 전문위원 1명	· 상법등기법	검사 0.5명, 전문위원 1명
· 상법	검사 1명, 전문위원 2명	· 민사집행법	검사 0.5명, 전문위원 0.5명

중요한 법령의 입법은 이제 개별국가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중요한 법령들의 경우에는 각종 국제회의 등에서 입법방향이 논의되고 이들 국제기구의 입법 권유를 각국이 수용하는 형태로 입법이 진행되는 추세다. 그런데, 전문인력 부족으로 국제적 입법 추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특화된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국제회의 참석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입법 분야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률	관련 국제기구	국제회의 참석 현황
민법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매년 약 10회 참석 (국제법무과)
상법	국제해사기구(IMO)	매년 1회 참석
	국제해법회(CMI)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매년 약 10회 참석(국제법무과)
통합도산법	국제통화기금(IMF)	
	국제파생금융협회(ISDA)	
	아시아도산법개혁포럼(FAIR)	2002. 12. 1회 참석

현실과 선진적인 법률이론을 법령 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학계·실무계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나, 안정적이고 상시적 논의 시스템의 형성은 미약한 상황이다.

#### 추진계획

경제현실을 반영하여 즉시 개정이 필요한 법령(예: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은 수시 개정 추진

민법, 통합도산법, 상업등기법은 현재 관련 학계·실무계 등으로 구성되어 운용중인 특별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계속 운영하여 제·개정 추진

#### 현재 운용중인 특별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1999. 2. 5. 설치, 12명, 2003. 15회 회의 개최)
- 증권관련집단소송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2001. 7. 6. 설치, 5명, 2003. 3회 회의 개최)
- 기족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2003. 6. 4. 설치, 11명, 2003. 12회 회의 개최)
- 도산법제개선실무위원회(제2기, 2002. 3. 12., 8명, 2003. 32회 회의 개최)
- 상업등기법제정실무위원회(2003. 10. 22., 6명, 2003. 3회 회의 개최)

#### 상법, 민사집행법 등 법무부 소관 기본 법률에 대한 개정 추진계획

- 2004. 3. 각 법률 분야별로 법무부 내 담당자를 선정하고 그 담당자를 중심으로 연구팀 구성
- 2004. 6. 연구팀별로 입법 수요 등 법령 개정 필요성 검토 및 필요예산 산정
- 2004. 9. 학계·실무계 관계자들로 특별분과위원회(법무자문위원회규정, 대통령령)를 구성하여 연구계획 수립
- 2004. 9.~ 법률 분야별 법령 개정 작업 추진

#### 2004년 구성 예정 특별분과위원회

##### 상법개정특별분과위

- 해상법 분야 | 국제간 기업활동의 대부분인 해상기업활동을 규율하는 해상법에 대한 국제적 통일성 확보 필요성, 각종 조약 및 국제적 동향을 반영하여 세계 10대 해운국 진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회사법 분야 | 전자투표제 도입, 물적 흡수합병 허용 여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그간 제기되어 온 개정 논의사항 검토

##### 민사집행법개정특별분과위

-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 개선과 보전처분취소절차 요건을 완화하는 등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방안 마련

####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방안 검토 및 추진

- 변호사 채용 추진 ("III. 추진전략" 참조)
- 법무심의관실 검사들의 근무기간 연장 방안 검토
- 법무자문위원회의 전문위원·연구위원(8명)의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급여를 현실화하는 방안 검토



### 법률 분야별 네트워크 구성을 지속적으로 추진

- 법무부 내 분야별 전문인력 확보와 함께 해당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법무부, 학계 및 실무계를 연결하는 분야별 네트워크 구성 추진
- 특별분과위원회가 분야별 네트워크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각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 또는 개편

### | 추진부서 |

법무실

## ◎ 형사법령의 정비

### 추진 목표

- 다원화된 사회 변화에 따라 달라진 범죄유형 및 가벌성을 반영하여 형법 및 각종 특별형법의 구성요건 및 형벌부과기준을 정비함으로써 통일적 형사실체법 체계를 정립
- 인권보호와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함께 도모하는 형사절차법의 개선
- 예측 가능한 형사사법 운영을 위한 통일적 양형기준의 정립

### | 현황 |

우리나라의 형사실체법은 형법과 각종 특별형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의 형법과 각종 특별형법은 어떤 범죄에 대하여 처벌의 사회적 필요성이 대두될 때마다 기존의 형사실체법을 부분적으로 개정하거나, 새로운 특별형법을 제정하는 식으로 형성된 것이다(p. 25. '주요 형사실체법 제·개정 연혁' 참조). 부분 개정과 필요에 따른 특별형법의 제정으로 형사실체법 체계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 형사실체법이 각종 범죄행위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있는지, 각종 범죄에 대한 형벌 부과기준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형사절차법의 개정을 통해, 1)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보석·국선변호 확대 등에 의해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2) 재정신청 확대 등에 의해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3) 자백 의존 수사관행을 벗어나 객관적인 증거수집에 의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이루어나갈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현재 사법개혁추진위원회(1999년), 법무부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 의견조회 등을 거쳐 형사절차법의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우리나라 형사실체법의 법정형은 상한과 하한만 규정하고 있어서 법관이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매우 넓다. 현재 대법원이 각 범죄유형별 양형요인 및 통계를 분석하여 합리적 양형방식을 정리하고는 있으나, 법관의 판단을 기록하는 객관적 양형기준은 없다. 또한 검찰은 구형을 할 때 적용하는 양형기준을 가지고 있으나, 그 양형기준이 모든 양형 요인을 합리적으로 최대한 반영하였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통일된 양형기준의 부재는 검찰의 구형과 법관의 선고형, 또는 법관들 사이의 선고형에 큰 편차가 나타나는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 범죄별 양형의 차이(이영란, 「한국양형론」 1999. 나남, p116참조)

- 1994년 4월 8일부터 7월 22일까지 서울형사지방법원 24명의 판사가 선고한 폭력, 절도, 사기, 강도, 횡령, 강간, 명예훼손 323건 분석
- 총 323건에 대한 평균 양형은, 실형 96건(29.7%), 집행유예 102건(31.6%), 벌금형 125건(38.7%)
- 법관별 실형선고율: A법관 75%, B법관 55.6%, C법관 50%, D법관 18.8%, E법관 25%

### 양형기준법이 도입되어 있는 외국 입법례

- 미국은 연방과 18개 주가 양형기준제를 채택 실시
- 미국 연방정부는 1985년 10월 양형개혁법(Sentencing Reform Act)을 제정하여 사법부 내에 양형위원회(Sentencing Commission)를 창설하였고, 그 위원회에서 1987년 5월 13일 양형기준(Sentencing Guideline)을 만들었으며, 판사는 이 양형기준에 따라 양형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추진계획

### 형사설체법의 정비

- 2004. 3. 형사법 통합 정비 연구단위 및 책임주체 선정
- 2004. 3.~12. 기초자료 수집, 연구범위 설정 및 외부 연구용역 예산 확보
- 2005. 1.~12. 연구단위별 연구 진행, 외부 연구용역 시행
- 2006. 1.~6. 정비방안 초안 마련
- 2006. 7.~12.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논의
- 2007. 1.~6. 정비방안 초안 확정 및 의견 조회
- 2007. 7.~9. 정비안 확정 및 법률개정 작업着手
- 2007. 12. 개정안 국회 제출

### 형사절차법의 개선

- 2004. 1.~3. 임기 만료된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장관 자문기구) 재구성 및 법안 검토 회의 계속
- 2004. 4.~6. 법무부 개정안 마련
- 2004. 6. 법제처 심사, 국회 제출

### 통일적 양형기준의 정립

- 2004. 1.~6. 검찰 양형기준 제정 추진단 구성(법무부, 대검, 법무연수원, 서울고등검찰청 등 참여)
- 2004. 6.~12. 검찰 양형기준의 기본방향 정립 및 구체적 추진계획 수립
- 2005. 1.~2006. 6.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제정, 시범실시
- 2006. 7.~2007. 12. 통일적 양형기준 정립, 시행

\*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양형기준법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동 위원회의 논의 경과를 참고하여 추진계획을 조정할 예정

## 추진부서

검찰국

## 주요 형사설체법 제·개정 연혁

### 형법

- 1953 제정
- 1975. 3. 25. 국가모독죄 신설
- 1988. 12. 31. 국가모독죄 폐지
- 1995. 12. 29. 〈대폭개정〉 보호관찰제도 도입, 컴퓨터 관련 범죄 등 신종범죄 처벌규정 신설, 공무집행방해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한 벌금형 추가, 결과적 기증범의 양형 조정, 사형 등 법정형의 일부 조정, 일부 범죄 과실범처벌 신설 등
- 1997. 12. 13. 변경된 각부 명칭, 법률 제명·조문, 광역시, 기관·단체 등 명칭 반영
- 2001. 12. 29. 컴퓨터사용사기죄 신설
- 2004. 1. 37조 후단 경합범 개선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1961. 6. 20. 제정
- 1962. 7. 14. 처벌대상을 명확히 규정(종래 '사회질서 문란, 사회적 불안 조성' 목적의 폭력행위에서 '집단적, 상습적 또는 야간' 행사한 폭력행위로 수정)
- 1980. 12. 18. 상습·조직적인 폭력행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 신설
- 1990. 12. 31. 조직폭력, 상습폭력, 집단폭력 및 흉기휴대폭력사범 처벌 강화 등
- 1993. 12. 10. 범죄단체 구성·가입행위 처벌 강화, 구성원의 일부 범죄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가입 강요·권유 및 단체 존속·유지 등을 위한 금품 모집·제공행위 처벌규정 신설
- 2001. 12. 19. 야간·단순 폭행·협박행위에 대한 반의사불벌 인정(전과자 양산 방지 취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1966. 2. 23. 제정
- 1968. 7. 15. 단독범 또는 비상습적으로 행한 관세범의 미수 등과 마약법상의 미수 등에 대하여 가중처벌 등
- 1973. 2. 24. 유괴범,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죄질에 따라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형을 가중
- 1980. 12. 18. 상습강·절도범, 절도범의 범죄단체조직 등에 대하여 법정형 대폭 강화 등
- 1983. 12. 31. 독직폭행치사상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1984. 8. 4. 사고아기 후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운전자에 대하여 처벌 강화 등
- 1989. 3. 25. 영리목적 악취·유인 등, 특수강도강간 등에 대한 처벌 강화
- 1990. 1. 13. 산림법 개정에 따른 관계 조문 정비
- 1990. 12. 31. 특수강도강간 등에 대한 처벌 강화, 국민경제 규모 확대, 물가상승 등을 고려 수뢰액 등의 구성

요건, 해당 금액과 법정형을 현실에 맞게 조정

- 1994. 1. 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삭제
- 1994. 6. 28.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국가기밀에 대한 누설행위 가중처벌 규정 신설
- 1995. 8. 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반영하여 국고손실행위에 대한 법정형 하향 조정, 처벌대상에 지방자치 단체 회계 책임자 추가
- 1995. 12. 29.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반영하여 뇌물죄의 적용을 받는 정부관리 기업체의 정의 규정 신설, 정부관리 기업체 간부직원의 범위에 대한 위임 규정 명백히 규정
- 1997. 8. 22. 관세법에 대한 처벌 완화
- 1997. 12. 13.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한 부처 명칭 변경,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인한 법률의 명칭 등 변경사항 반영
- 1999. 12. 28. 관세법 개정에 따른 관계 조문 정비
- 2000. 1. 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른 관계 조문 정비
- 2000. 12. 29. 관세법 개정에 따른 관계 조문 정비
- 2002. 3. 25. 도주차량(치상) 운전자에 대한 법정형에 벌금 추가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983. 12. 31. 제정
- 1988. 12. 31.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 1990. 12. 31. 국가경제규모의 확대, 국민의 법감정의 변천에 따라 구성요건, 해당 금액과 법정형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
- 1998. 1. 13.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개정,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관한법률의 제정 및 공인회계사법의 정비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 2001. 3. 28. 상호신용금고법의 상호저축은행법으로의 명칭 변경 및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 2002. 12. 5.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임·직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보증을 알선하고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범위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추가

####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1994. 1. 5. 제정
- 1995. 1. 5. 보호관찰법에 간생보호법을 흡수,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로 명칭 변경 및 전문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 1997. 8. 22. 친족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범위 확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등
- 1997. 12. 13. 행정절차법 제정,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관계 조문 정비
- 1998. 12. 28. 몰래카메라 설치·촬영 등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
- 2001. 1. 29.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관계 조문 정비
- 2003. 12. 11.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시 진술과정을 녹화, 13세 미만이나 장애인의 경우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증거능력 부여 등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1981. 12. 31. 제정
- 1984. 8. 4.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관계 조문 정비
- 1993. 6. 11. 차의 범위에 중기 포함, 공소권 면제 예외사유에 보도 침범 사고 및 개문 밭차 사고 추가
- 1995. 1. 5.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관계 조문 정비
- 1996. 8. 14. 벌금형의 상향 조정
- 1997. 8. 3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정에 따른 관계 조문 정비
- 2003. 5. 29.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관계 조문 정비

#### ◎ 경미범죄의 비범죄화 및 규제의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 추진목표

- 경미범죄 전과자를 양산하는 현행 제도를 경미범죄를 비범죄하는 방향으로 개선
- 경미범죄의 비범죄화와 동시에 공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과태료 등 행정벌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



### | 현황 |

상당수 행정법규에서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어 형벌법규의 과잉현상을 초래하고 있고, 이는 국민의 준법정신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체범죄에서 행정형벌이 차지하는 비율						
연도	전체		형사법		행정법	
	인원	증감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03	2,441,267	+1.0	1,175,043	+48.1	1,266,224	+51.9
2002	2,416,711		1,330,458	+55.1	1,086,253	+44.9

현재 경미범죄는 즉결심판절차법과 일반 형사절차로 이분하여 처벌하고 있는데, 즉결심판의 경우 범죄대상이나 소추권자의 재량범위가 모호하여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한편, 행정형벌을 두지 않은 행정규제 법률의 경우에는, 법률 제정시 집행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과태료 집행률이 50%를 하회하는 등 행정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 잣은 사면으로 과태료 납부 등을 회피하는 심리가 퍼져서 행정 규제의 실효성이 더욱 저하되고 있다.

### | 추진계획 |

行政형벌의 과태료 전환기준을 마련하여 전환 추진(현재 “과태료전환실무위원회” 운영 중임)

즉결심판절차법을 폐지하고, 통고처분을 확대하며, 경미한 범죄는 비범죄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행정규제에 대한 실증적 실태 파악 후 각 규제별 존속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과태료 징수 부과 절차의 개선 방안을 마련

### | 일정 |

- 2004. 1.~ 3. “행정규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 및 “적정한 사면권 행사 방안”의 연구를 위하여 타 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무실 중심의 연구팀을 구성 즉결심판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팀 구성
- 2004. 4.~ 6. 각 주제에 관한 연구계획서 작성
- 2004. 6.~ 2004. 12. 연구결과 완성, 법무부정책위원회 논의
- 2005. 1.~ 필요 후속조치 시행

※ “행정규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과정과 보조를 맞춰 “과태료전환실무위원회”에서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에 관한 연구 및 후속조치 마련

### | 추진부서 |

법무실, 검찰국



## 구체적 과제 ②

###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령 및 제도 정비

#### 추진목표

- 세계인권선언, 우리나라가 가입한 6대 국제인권규약(①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②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③ 고문방지협약 ④ 아동권리협약 ⑤ 여성차별철폐협약  
⑥ 인종차별철폐협약) 및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을 비롯한 인권 관련 국제규약이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인권 관련 국내 법령과 제도를 정비
- 유엔 등 국제기구의 권고, 국제인권단체 등 NGO의 의견을 검토하여 국내 법령 및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

#### 현황

현행 법령은 국제인권규약이나 기타 인권 관련 국제기준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제기구로부터 일부 개선 권고를 받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 남아 있다.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에 따른 인권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국제기구에 권고사항이나 국제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부보고서를 제출해오고 있다.

#### ■ 국제인권규약 정부보고서 제출 현황

##### 가. 고문방지협약(주관부처: 법무부)

- 1996. 11. 13. 제1차 정부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음
- 제2차 정부보고서는 2001. 1. 법무부안이 외교부에 송부되어, 현재 영문작업중임

##### 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주관부처: 법무부)

- 2001. 5. 제2차 정부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음
- 제3차 정부보고서는 2006. 6. 30.이 제출기한인바, 협약이행상황을 정부 부처별로 점검·취합하여 UN에 제출할 예정임

##### 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주관부처: 법무부)

- 1999. 10. 22. 제2차 정부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음
- 제3차 정부보고서는 현재 보고서 국문본이 완성되어 영문작업중임

##### 라. 여성차별철폐협약(주관부처: 여성부)

- 1998. 7. 4. 제4차 정부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음
- 제5차 정부보고서는 2003. 8. UN에 제출되어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임

##### 마. 인종차별철폐협약(주관부처: 외교통상부)

- 2003. 8. 8. 제12차 정부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음
- 제13차 정부보고서는 2006. 1. 14.이 제출기한임

##### 바. 아동권리협약(주관부처: 보건복지부)

- 2003. 1. 제2차 정부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음
- 제3·4차 정부보고서는 2008. 12. 19.이 제출기한임

특히, 형사사법제도와 관련하여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개선을 권고받은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수사시 변호인 참여 보장
- 체포·구금시 신속한 법관 대면권의 보장
- 경찰 구금기간의 단축
- 고문 정의 규정과 고문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 부부 강간의 처벌
-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
- 사형적용범죄의 축소
- 고문범죄에 관한 규정 신설
- 인종, 피부색, 혈통, 출신국가, 출신민족에 의한 차별을 명확히 금지하고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



위 권고사항 중 수사시 변호인 참여제도 및 필요적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하여는 법무부정책위원회에서 그 도입을 의결한 바 있고, 현재 이를 반영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그 이외에도 법무부정책위원회에서는 변호인 참여제도 및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등에서 피의자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구속된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는 국선변호인 확대 방안을 의결하였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각종 국제협약이나 조약에 따른 국내법의 제·개정을 진행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국제형사재판소협약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3월 8일 국제형사재판소협약에 가입(2000년 3월 8일 협약 가입(서명), 2002년 7월 1일 발효, 2002년 11월 13일 비준, 2003년 2월 1일 비준 효력 발생)하였다. 법무부는 현재 그 국내 행입법 초안을 준비중이다. 그 이외에도 법무부는 국제인권규약상의 개인통보제도에 따른 국내구제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통보제도란 국제인권규약상의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국내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마쳤음에도 권리침해상태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 유엔 해당 위원회에 통보하고, 유엔의 해당 위원회에서 당사자의 주장을 심사하여 해당 국가에 권리구제를 권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에 대한 인권보장의 수준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법무부는 2003년 8월 교정시설에서의 인권수준 향상을 위하여 정책 개발 및 법령 개정을 담당할 교정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였다. 교정태스크포스팀은 인권단체, 학계 등의 외부 전문가와 교정국 직원들로 이루어졌는데, 우선 행형법 및 그 하위 법령의 개정방향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그 첫 번째 결과로 법무부는 교정태스크포스팀에서의 논의를 기초로 “수용자규율 및 징벌에관한규칙” 개정안과 “계구의제식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두 규칙의 제·개정 방향에 대하여 법무부정책위원회에서도 논의하고 의결한 바 있다. 두 규칙은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후 2004년 3월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정책위원회에서는 2003년 수차례에 걸쳐 사회보호법에 규정된 보호감호제도의 개폐 여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법무부는 계속하여 보호감호제도의 개폐 여부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1월 12일 보호감호제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정책위원회 및 각계에서 보호감호제도에 관한 논의가 진행중

인 동안에도 보호감호제도를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피감호자의 가출소를 대폭 확대하여 보호감호 적용대상 범위를 실질적으로 축소하였다(2003년 가출소 현황은 “IV. 2003년 법무부 개혁의 성과” 참조).

정부의 다른 부처 소관 법령 중에도 국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 많이 있다. 법무부는 정부 입법안에 대한 법적 측면에서의 검토,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다른 정부 부처의 소관 법령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여야 한다.

### 추진계획

#### 형사사법제도의 개선

- |              |   |
|--------------|---|
| 2004. 1~ 6.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제도 및 필요적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의 내용을 반영한 형사소송법 법무부 개정안 확정 |
| 2004. 6~ 12. | 법제처 심사, 개정안 국회 제출   |
| 2004. 6~     |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되는 것 이외의 국제기구 권고사항은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               |

#### 국제형사재판소 국내이행입법 제정 추진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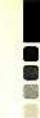
- |          |                |
|----------|----------------|
| 2004. 3. |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의뢰 |
| 2004. 6. | 국회 제출          |

#### 개인통보제도 관련 국내구제절차 연구

- |              |                             |
|--------------|-----------------------------|
| 2004. 1~ 6.  | 개인통보제도에 따른 국내구제절차 마련을 위한 연구 |
| 2004. 7~ 12. |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 교정 관련 법령의 정비

- |          |                             |
|----------|-----------------------------|
| 2004. 3. | 징벌 및 계구제도 관련 규칙 개정안 확정 및 시행 |
| 2004. 9. | 행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안 작성          |



### 보호감호제도 개폐 검토

국가인권위원회의 폐지 권고가 있었으므로 보호감호제도의 폐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법무부안 확정 예정

- 2004. 1.~3. 공청회 개최 및 관계기관 의견 조회, 법무부안 확정
- 2004. 4.~6. 법제처 심사, 정부안 확정, 정부안 국회 제출

### 인권적 관점에서의 법령 및 제도 정비

- 2004. 3. 법무부 인권협의시스템 구축, 실국별 인권 관련 중점업무 및 공동업무 개발
  - ※ 인권협의시스템: 검찰국, 교정국, 보호국, 출입국관리국 및 법무심의관실과 인권 업무 관련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법무부 업무영역별 인권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사항 연구, 모니터링, 정보공유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진행
- 2004. 9. 법무부 인권 관련 업무 중간점검·평가
  - 시민사회단체, 업무 영역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및 추가 과제 개발
- 2004. 12 세계인권선언기념 법무부 인권심포지움 개최

### 추진부서

법무실, 검찰국, 보호국, 교정국

### 구체적 과제 ③

## 남북협력증진 및 통일에 대비한 법령 정비 및 연구활동 강화

### 추진목표

-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대북사업 및 남북경제협력 제도화에 대한 법적 지원, 남북교류협력 진전에 따른 관련 법령의 정비 지원 및 법적 자문 내실화
- 경수로사업과 관련된 법적 문제점 검토, 대처방안 강구
- 북한·분단국가·체제전환국가 법제 연구활동 강화

### 현황

남북관계가 법적·제도적 정착 초기단계로 이행함에 따라 4개 경협합의서 후속조치 및 신변 안전보장방안 마련 등 남북경제협력 제도화에 대한 법적 지원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 남북한 사이의 교류가 증가하는 등 남북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관점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경수로사업이 중단되어 있는바, 사업 중단에 따른 법적 문제점 검토 및 향후 대응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남북교류의 확대는 우리 법률의 개정 노력에서 나아가 북한의 법률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법률제도에 대한 이해는 현재의 교류 및 북한의 경제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통일 후의 사법제도 통합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법제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분석과 함께 중국 경제특구와 동유럽·러시아 등 체제전

한국 사례에 대한 심층연구·분석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북한 및 체제 전환국의 법제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하고 있다.

\* 2003. 12. 31. 현재 특수법령자료 총 9,986건 : 수집자료 8,334건, 생산자료 888건, 특수자료 764

#### 추진계획

##### 남북경제협력 제도화 법적 지원

- 4개 남북경협합의서 시행 및 세부규정 합의에 대비,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중재규정(안)」 등 준비
-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등 남북회담에 직접 참여하여 합의문건 작성 및 협상 등 법적 지원
- 남북왕래 활성화 대비, 신변안전보장 및 형사사건 처리방안 준비
- 사업추진 관련 각종 법적 문제점 사전검토 및 해결방안 제시

#####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정비 지원 및 법적 자문

- 통일부·법제처 등 유관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의 제·개정에 대한 법적 지원
- 방북승인, 북한물품반입 등 남북 인적·물적 교류 관련 법률의견 제시
- 남북교류협력과정에서 파생된 법률사례 및 관련 판례를 수집·분석하여 유사한 법률문제 발생시 참고토록 자료화 작업 병행

##### 경수로사업 법적 지원

- 경수로사업 중단에 따른 법적 문제점 검토, 대응방안 수립
- 뉴욕 케도본부 파견검사에 대한 활동 내실화 방안 마련

##### 북한 및 체제전환국 법제 연구활동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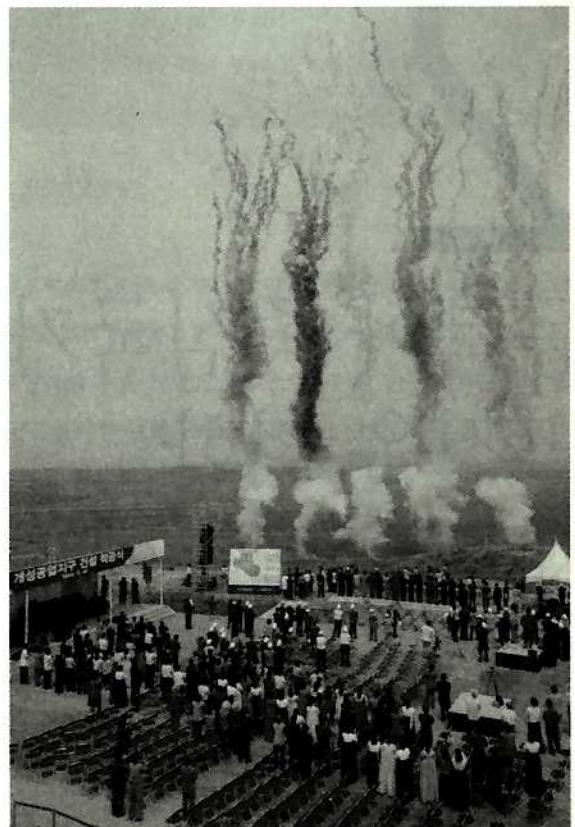
- 북한의 경제개방에 대비, 중국의 경제특구 및 베트남의 개혁개방정책에 따른 법제정비 현황 연구(통일기획 요원 베트남 파견)
-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활성화 및 세미나 참석을 통해 학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 북한법제 자료의 국내외 수집경로 다변화 모색, 수집·생산 자료의 전산관리 강화 및 활용방안 강구

#### 일정

2004. 1.~ 12.	특수법령자료의 국내외 수집경로 다변화 모색 및 전산관리시스템 보완
2004. 3.~ 6.	통일기획요원 검사 1명 베트남 파견
2004. 3.~ 12.	베니스위원회 정기총회 연4회 참가 및 체제전환국 사례연구, 자료집 발간
2004. 5. 11.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정기총회 연 2회 개최, 세미나 및 자료집 발간
2004. 8.	'베트남의 개혁개방정책에 따른 법제정비 현황' 자료집 발간
2004. 10.	'중국 경제특구법제 연구' 자료집 발간

#### 추진부서

##### 법무실



# 2

##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외국인정책의 수립

**구체적 과제 ①** 종합적인 외국인정책의 수립

**구체적 과제 ②** 국적제도의 개선

**구체적 과제 ③** 사증발급 및 입국심사절차의 개선 등 출입국관리업무의 선진화

### 구체적 과제 ①

#### 종합적인 외국인정책의 수립

##### 추진 목표

- 동북아경제 중심국가 실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자 및 IT·BT 등 첨단산업 관련 고급인력 유치, 장기체류 및 고액투자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부여 조건 완화 등 출입국관리제도 개선
-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단순노무 외국인력에 대한 합리적 체류질서 확립

##### 현황 |

경제발전에 따라 외국과의 인적 교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적 교류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시적인 체류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경제활동을 위한 중·장기 체류가 급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후발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단순노무인력의 유입이 급증하고, 이들의 불법체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투자자나 연구인력 등 고급인력의 교류도 확대되고 있는데,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선진자본국으로 도약을 위해서는 이러한 고급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국내 유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외국인력의 교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한 중·장기적 외국인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외국인정책의 연구 및 수립을 위한 체계와 기능은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학교수, 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나 다른 부처와의 협력을 통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체계나 이를 위한 용역예산 등이 갖추어

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서 외국인정책과 관련하여 2003년에 집행한 연구용역비는 1천 5백만원(용역주제, “외국사례를 통한 국내 불법체류자 관리방안”)에 불과하다. 미국 국토안전부(DHS)가 2004년도 예산 362억불 중 3억 5천만불을 연구개발 예산으로 책정한 것(출처 : 미국 국토안전부 홈페이지)과 비교해보면 우리 외국인정책의 연구 현실을 짐작할 수 있다.

구 분	단순 노무인력		고급 인력				
	산업연수 (D-3)	비전문취업 (E-9)	교 수 (E-1)	연 구 (E-3)	기술지도 (E-4)	전문직업 (E-5)	기업투자 (D-8)
1999년	46,814	.	2,012	1,303	1,259	769	18,955
2000년	45,651	.	1,828	1,694	1,141	717	24,442
2001년	28,092	.	1,750	2,128	956	770	25,328
2002년	31,818	.	2,005	2,642	851	769	25,669
2003년	52,885	184,199	2,394	3,355	802	649	27,042

#### 추진계획

중·장기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출입국정책추진단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 설치, 운영

#### 일정

- 2004. 3. 출입국관리국장 직속으로 출입국정책추진단 설치, 민간전문가 선정 및 정책자문위원 위촉 (출입국정책추진단과 정책자문단 구성시부터 수시로 워크샵을 개최)
- 2004. 6. 출입국정책추진단 및 정책자문단에 의해 연구과제 및 용역 내용 선정
- 2004. 9.~ 종합적인 외국인정책의 수립 및 우선 추진 정책 과제의 실행

#### 추진부서

출입국관리국

#### 구체적 과제 ②

#### 국적제도의 개선

#### 추진목표

- 외국인정책과 보조를 맞춰 국적제도를 개선하고, 국민 및 재외동포의 합리적 인적 교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동북아 중심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 국제화·개방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귀화·국적회복 신청 등 각종 국적 관련 민원의 신속·정확한 처리 방안 마련

#### 현황

앞의 구체적 과제 ①에서 본 외국인정책은 국적제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국적제도와 관련해서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외국인력의 유치, 국가간 교류의 확대에 부응하는 인적교류시스템이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수립 기능도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국제화·개방화에 따라 인적교류가 가속화되고, 최근 국가위상이 상승함에 따라 혼인 귀화신청, 국적회복신청 등 국적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노력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국적민원의 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으로 국적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지속적인 업무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당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2003년 업무혁신 사례는 “IV. 2003년 법무부 개혁의 성과” 참조). 업무혁신만으로는 국적 민원의 폭증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적 민원을 담당할 기구와 인력 증편의 필요성 역시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민원 증가 현황												
구분	귀화			국적회복			국적상실			국적이탈		
	접수	처리	미제	접수	처리	미제	접수	처리	미제	접수	처리	미제
연도	접수	처리	미제	접수	처리	미제	접수	처리	미제	접수	처리	미제
2002년	2,955	2,463	2,988	1,980	1,123	3,706	19,240	17,011	10,813	812	781	31
2003년	6,204	5,790	3,402	1,359	1,852	3,187	17,441	28,010	244	771	734	37

\* 귀화신청 접수 206.9% 증가, 처리 258.3% 증가 | 국적회복신청 접수 19.2% 감소, 처리 162.7% 증가

### 추진계획

국적업무와 출입국업무를 통합수행함으로써 국적업무처리의 효율성·전문성·편의성 도모 (출입국관리국 내에 국적업무 전담과 신설 검토, "Ⅲ. 추진전략" 참조)

####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업무혁신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

- 중국동포 국적업무 처리지침을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 업무에 두루 적용될 수 있는 일반 지침으로 그 체제 및 내용을 수정
- 국적법 개정(2004. 1. 20. 공포)에 따른 후속절차 마련 (한국인 배우자의 실종 확정기준, 혼인파탄시 귀책 시유 판단기준 등)

#### 출입국관리국에 설치되는 정책자문단(p.40 참조)에서 다른 외국인정책과 통합적으로 중·장기적 국적 정책을 연구하여 구체적 추진계획 마련 (재미동포, 재일동포 등 거주 지역별 숙원과제 포함)

### 추진부서

법무실

### 구체적 과제 ③

#### 사증발급 및 입국심사절차의 개선 등 출입국관리 업무의 선진화

### 추진목표

- 사증발급 및 입국심사절차의 투명성과 적정성 강화
- 신속·정확한 출입국심사제도 구현을 위한 과학적 출입국심사체계 구축
- 외국인 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과학적 정보관리체계 마련

### 현황

재외공관 주재 사증담당 영사의 자격, 선발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자의적 선발 가능성의 상존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사증발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불신의 가능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의 태국 등 비자면제 협정 체결국가 국민들의 불법체류자가 증가함에 따라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국거부된 이들 국가 국민들의 불만이 매우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선진 외국의 선례를 따라 이들 국가 출발지 공항에 상주하여 출국 심사를 돋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이민연락관(ILO) 제도를 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국가간 교류의 증가로 출입국 인원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출입국관리 인력의 증원만으로 이러한 출입국의 증가에 대처하기는 어렵고, 출입국심사에 과학적 시스템을 도입하여 출입국에 소요되는 시간을 축소하고 출입국자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법무부는 2003년 11월 10일 출입국관리체계 서비스과학화(TIPIS) 사업안을 확정하고, 정보통신부의



협조를 받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TIPIS의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 및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 추진계획 작성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였다.

국가간 교류의 증가는 여권·사증 위변조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죄행위의 증가를 가져온다(아래 표 참조). 또, 외국인력의 국내 유입 증가로 인하여 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 특히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 증가 가능성 및 불법체류자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현재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투자지원시스템의 구축에만 한정되어 있다. 법무부는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위 사업을 TIPIS에 의한 “외국인종합행정서비스 인프라구축”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례 현황							
구분	계	여권·사증 위변조 등	체류활동 위반	자격변경 위반	기간연장 위반	불법고용	기타
2001년	45,947	5,420	4,442	13,141	4,939	3,829	14,176
2002년	35,160	4,708	2,160	8,544	6,032	2,541	11,175
2003년	47,478	4,572	5,524	9,859	10,389	1,913	15,221

#### | 추진계획 |

- 2004. 3. 태국, 홍콩 등에 이민연락관(ILO) 신설 추진
- 2004. 6. 출입국관리국 파견 사증발급담당 영사의 선발절차 지침 마련

#### 출입국관리체계 서비스과학화(TIPIS) 추진일정

- 2004.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부터 연구보고서 수령
- 출입국정책추진단 내 출입국관리정보화추진반 설치 (※ 출입국관리국에 설치될 출입국정책자문단에 인문사회분야 전문가와 컴퓨터 및 정보통신 전문가들을 포함시켜 TIPIS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외국인종합행정서비스 인프라구축 사업으로의 추진을 위한 관계 부처

#### 협의

- 2004. 6~ 국민출입국심사 간소화를 위한 출입국신고서 제출 생략 및 생체인식(Biometrics) 시스템 도입 등 출입국관리 시스템의 과학화 지속 추진
- 2004. 12. 여권 자동판독기(MRP Reader) 도입 및 승객정보 사전통보제도(APIS, 출발국 항공사로부터 승객정보를 사전 입수하여 출입국심사를 하는 제도로 심사대기시간을 종전 1인당 30~35초에서 약 20초로 단축할 수 있고, 승객수 및 국적별 분포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효율적인 심사관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등 실시

#### | 추진부서 |

출입국관리국, 정보화담당관



# 3

## 법률서비스기능의 강화

구체적 과제 ① 국가소송, 행정소송 충실향

구체적 과제 ② 통상업무 지원, 국제조약 등 국제관계업무의 전문성 확충

구체적 과제 ③ 체제전환국 법령정비 지원 등 법률문화교류사업 추진

구체적 과제 ④ 법률구조의 확대

### 구체적 과제 ①

#### 국가소송, 행정소송 충실향

##### 추진목표

- 국가송무업무의 질적·양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송무조직의 확대개편 추진
- 송무지도감독의 강화
- 검사 및 공익법무관의 직접소송수행율을 높이고, 일선 행정청 소송수행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 확립함으로써 국가소송수행 내실화
- 외국에서의 대한민국 상대 소송이나 외국과의 분쟁에서 국가 및 국민의 이익 보호 강화 방안 마련

##### 현황

과거에 비하여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은 양적으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송의 내용에 있어서도 그 유형이 다양화되고 대형화·고액화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법무부, 검찰청 및 일선 행정청에서 송무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송무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현황 (신건 기준)			
연도	국가소송		행정소송
	건수	금액(억원)	건수
1998	3,163	12,113	8,749
1999	3,340	6,745	9,341
2000	3,193	7,989	9,352
2001	3,500	8,885	11,313
2002	3,225	8,474	11,291
5년 평균	3,284	8,841	10,009



#### 〈고액 국가소송 사례〉

- 삼성SDS의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운영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소송(573억원)
- 김포공항 소음피해소송(200억원)
- 군산 미군비행장 소음피해소송(500억원)
- 매향리 사격장 소음피해소송(460억원)

송무인력 현황(법무부 및 검찰청)					2002년 기준
인원수	1인당 사건부담(건)				
	전체	국가소송	행정소송	국가배상	
검사	25	580.6	129	451.6	33.2
공익법무관	63	230.4	51.2	179.2	13.2
일반직원	82				

국제화시대를 맞아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제기된 소송이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소송에서 국가이익을 적극적으로 옹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의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은 미약한 상황이다. 한편, 국경을 넘어서는 분쟁이나 국민과 외국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 등이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분쟁에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 추진 계획

##### 국가송무조직의 확대개편 ("Ⅲ. 추진전략" 참조)

- 인권송무국 및 지방송무조직 신설 추진
- 장기적 과제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국가변호사로 채용, 인권송무국 및 지방송무조직에서 근무하도록 하여 송무전문인력 확보, 법률전문가에 의한 국기송무수행 도모
- 2004. 1.~ 3. 조직신설 및 재편 계획 수립을 위한 외부 용역
- 2004. 4.~12. 국가송무조직 확대개편방안 수립 및 추진

#### 송무지도감독 강화

- 송무지도점검업무를 송무감사업무로 확대개편, 감사결과를 담당검사·공익법무관·직원 등에 대한 근무평정에 반영하는 등 일선 검찰청의 송무업무수행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2004. 1.~ 12. 송무감사로 전환 추진 (2004년도 지도점검대상 검찰청에 대한 지도점검 대상기간, 일정 등 조정을 통하여 사전 준비)
- 2005. 1.~ 매년 1회(현재는 2년에 1회) 각 검찰청에 대한 송무감사 실시 추진

- 정부중앙부처 소관 소송에 대한 법무부 직접 지휘 영역을 확대하고, 정부 중요시책 관련 중요 소송은 법무부가 직접 수행하는 방안 연구. 그 이외의 국가소송에 대하여도 해당 부처의 송무업무를 지원하는 국가송무지원시스템의 구축

- 2004. 1.~ 6. 방안 연구 및 자체 계획안 수립
- 2004. 7.~ 계획 확정 후 시행

#### 송무수행의 내실화

- 검찰청에서 일선 행정청 소송수행자들의 소송수행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도록 답변서 등의 사후보고 체제를 사전보고 체제로 전환하는 등 송무수행 내실화를 위하여 송무 관련 법령 개정 적극 검토
- 2004. 1.~ 6. 개정 검토
- 2004. 7.~ 시행

- 공익법무관의 법정출석건수·정보보고건수 등 소송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 계량화하여 근무평정 및 인사에 반영하여 공익법무관의 직접소송수행율 등 제고

- 2004. 1.~ 3. 시행 방안 수립
- 2004. 4.~ 시행

#### 국제 분쟁에서의 국가 및 국민 이익 보호 방안

외국 법정에 제기된 대한민국 상대 소송에 대한 법무부 직접 지휘·감독 방안 수립 및 시행

- 2004. 1.~ 6. 시행 방안 수립
- 2004. 7.~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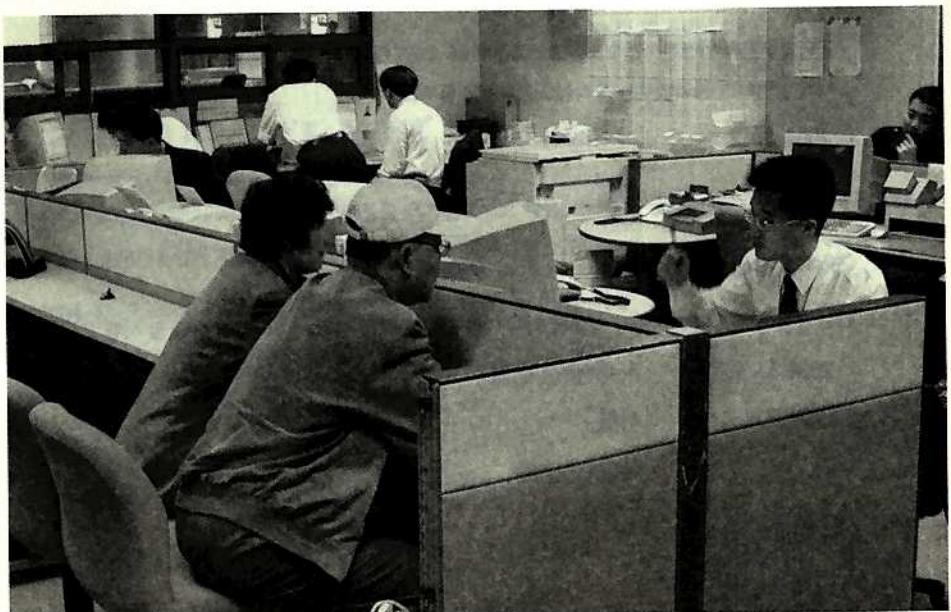
### SOFA 민사분과위원회 개최

협정배상사건 중 소액배상사건(현재 200만원 이하)에 대한 지급절차 간소화 방안, 미군헬기장 소음 등 미군 시설물 관련 피해배상절차 등 논의

2004. 1.~2. 중 회의개최 (필요시 계속 진행)

### 추진부서

법무실



### 구체적 과제 ②

## 통상업무 지원, 국제조약 등 국제관계업무의 전문성 확충

### 추진목표

-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익보호를 위하여 정부간 통상협상 및 조약 체결과정에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지원체계의 마련
- 국제수준의 법률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제규범의 통일화 작업에 참여 및 일반화된 국제규범을 반영한 국내법 제·개정의 추진
- 동북아경제 중심국가로의 발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 수출업체에 대한 법률지원 체계 확립

### 현황

기존의 다자간 통상협상뿐만 아니라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협상 등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그 협상단계에서부터 적극적 법률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 2003. 12. 22. 한·일 FTA 제1차 협상 개시

2004. 1. 27.~29. 한·싱가폴 FTA 제1차 협상 개시

국제적 교류 증대에 따라 국제규범 및 법률의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변화와 비교하면 국제통상법 분야에서 국내 연구활동이 충분하지는 않고, 통상규범에 대한 자료축적도 미흡한 상태다. 법무부는 2003년에 '자유무역협정(FTA) 연구', 'WTO 보조금 연구' 등 연구서적 4권을 발간하고, 격월간지 '통상법률'을 발간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국제통상법 분야에서의 법률 수요에 대응하기 충분하지 않다. 우리나라가 동북아경제 중



심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제통상법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사법 분야의 국제규범 통일화 작업이 여러 국제기구에서 활발히 진행중이다. 국제규범 통일화 영역에 있어서 경제적 성장에 걸맞는 국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국내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를 위한 지원체계 정착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의 양성은 국내 법률을 국제적인 법률수준에 맞게 발전시키고, 국민 또는 국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증진시켜 나가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 추진계획

- 각종 국제협상 및 조약 체결시, 협상 전분야에 걸친 체계적, 전문적 법률지원으로 정부부처 내 로펌으로서의 역할 수행
  -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다자간 통상협상인 WTO, OECD 등의 협상 및 조약체결시 직접 참여, 신속한 법률지원
  - 통상법률전문가 인적자원 확대 및 활용 방안 연구
  - 통상법률전문가 양성을 위한 번호사 채용 및 전문가 양성 지속 추진

#### 통상규법에 대한 활발한 연구성과 축적

- 개별 연구성과의 축적 및 연구서적의 지속적 발간
  - 통상법률 연구성과 교류 및 발전을 위한 연구공간의 활성화
- |            |                     |
|------------|---------------------|
| 2004. 1~3. | 통상법률 연구·발전 연간계획의 수립 |
| 2004. 4~   | 연구계획의 시행            |

#### 국제수준의 법률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활동 강화

- '국제거래법연구단' 운영 활성화
- 국제규법 성안과정에 적극 참여, 법률 분야별 전문가 양성

#### 중소·벤처기업 수출업체의 수출, 투자유치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 수출 중소·벤처기업 지원번호사단 활성화 및 기금 확충
- 수출 중소·벤처기업 지원제도의 적극 홍보

#### 추진부서

법무실

#### 구체적 과제 ③

### 체제전환국 법령정비 지원 등 법률문화교류사업 추진

#### 추진목표

- 체제전환중인 구공산권 국가들의 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를 향한 법률정비를 지원,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 전수를 통해 국제사회에 공헌
- 체제전환국과의 다양한 법률문화교류를 통하여 우리 기업의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 및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법률지원 기반 구축

#### 현황

구공산권 국가들이 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법률정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법무부는 체제전환국의 법령 제·개정 실무책임자간 교류·협력 창구를 개설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법률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 법무부 중견간부 국제회의를 연례화하여 2003년 12월 '제1회 체제전환국 법령 제·개정 실무책임자 회의'를 개최하였고, 아프가니스탄 등 8개국 법령 제·개정담당자를 초청하여 2003년 9월 '제1회 체제전환국 법령정비 지원과정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법률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국가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타부처 및 민간단체의 체제전환국에 대한 기존 재정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 정부의 직접 개입시 예상되는 대상국의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대상국의 자발적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경제계, 학계, 관련 부처와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 추진 계획

법률문화교류사업을 총괄 추진할 산·학·관 협의체 구성

- 재경부, 외교부, 산자부, 한국국제협력단, 무역협회, 대한변협, 한국법제연구원, 서울대 BK21 법학연구소  
관계자 등으로 구성, 법률문화교류사업 추진계획 수립, 집행, 총괄 기구로 활용
- 사업우선순위, 예산확보, 인적자원 확보방안 등 마련
- 경제계, 학계, 정부부처간 예산지원, 교섭창구, 입법실무지원 등 역할분담 및 대상국별 전담지원체제 구축
-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적개발원조사업, 한국법제연구원의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사업 등 기존 사업과의 연계추진

한국법 강좌 개설 등 신규사업 지속 발굴

- 한국국제교류재단과 협력, 한국법 강좌 개설 추진
- 국제교류진흥원의 정부초청 장학생 선발 프로그램에 대상국의 법률전공학생 배정 요청
- 국내 대학과 대상국 대학간의 인적·물적 교류 지원

법무분야 국제협력체제 강화

- 법무협력·자료교환협정 체결, 법률가 상호방문 등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 '체제전환국 법령 제·개정 실무책임자 회의' 정례화를 통한 국가간 교섭창구 공고화
- '체제전환국 법령정비 지원과정'의 확대실시 추진

대상국의 법령정비 현황 및 미국 등 타국가 법률문화교류사업에 대한 연구·병행

- 미국·일본 등 타국의 법률문화교류사업 성공사례를 연구, 추진방향 설정에 활용
- 대상국의 법령 제·개정 현황 및 직·간접적 법령수요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통해 기본자료 축적 및 사업보고서 발간 추진

## 추진부서

법무실

## 구체적 과제 ④

### 법률구조의 확대

#### 추진목표

- 경제적 빈곤 또는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복지 증진
- 법률구조 대상자를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전국민의 50%까지 확대하고, 법률구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을 통하여 법률구조서비스의 질적인 확대 도모
- 변호사와 공익법무관 등 전문인력의 확보, 민간단체와의 연계 강화, 인터넷을 통한 법률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법률구조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현황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피해여성(2003. 1.) 및 모·부자복지법상 보호대상인 모·부자가정(2003. 6.) 등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실시,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법률구조 확대(2003. 4.) 등을 통해 2003년 기준으로 전국민의 약 28.5%가 법률구조 대상자가 되었다. 법률구조가 서민들의 분쟁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그 대상자의 범위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률구조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실제 법률구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법률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출장상담 등 다양한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수용자들의 민·형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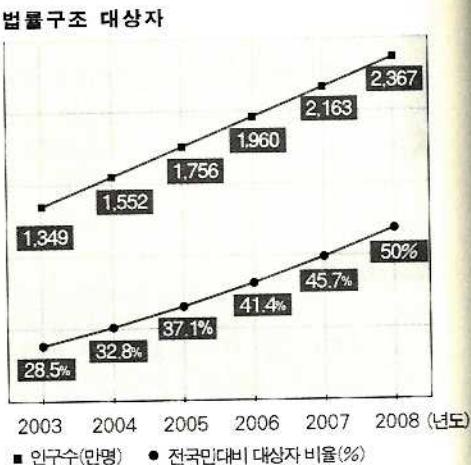


법률문제와 정벌 관련 사항 등 각종 민원을 원활히 해결하여 수용자들의 권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3년 6월 16일부터 전국 44개 교도소·구치소 등 수용시설에 대한 출장법률상담을 실시하였고, 2003년 9월 1일부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등 63개 시설로 이를 확대하였다.

#### 추진계획

##### 법률구조 대상자의 확대

- 법률구조 대상자를 매년 4.3%씩 확대 예정
- 시행 첫해인 2004년 1월부터 법률구조 대상자를 월 평균 수입 150만원 이하(전국민의 약 28.5%)에서 170만원 이하인 사람(전국민의 약 32.8%)으로 확대. 법률구조(본안 등 소송구조) 실적은 23,770건에서 27,360건으로 약 3,590건 증가 예상



##### 법률구조 대상사건의 확대

- 2004. 1. 법률구조 대상사건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각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사건 추가
- 2004. 1.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형사법률구조 실시

##### 법률구조서비스의 질적 향상 방안

- 2004. 2~4. 소송수행을 담당하는 변호사 증원, 법률구조 담당 공익법무관 확보 노력
- 2004. 1~12. 법률구조 관련 민간단체와의 교류협력 지속 추진  
인터넷을 활용한 본인소송 지원 및 법률상담, 법률정보제공 지속 추진  
법률구조공단 직원에 대한 민사, 가사, 형사, 행정, 헌법소원 등 부문별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업무 전문성을 제고

##### 외국인보호소 기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출장법률상담을 확대

#### 추진부서

법무실, 대한법률구조공단

# 4

## 사회적 약자의 권리 향상

**구체적 과제 ①** 형사절차에서 여성, 장애인 등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법령 개정 및 절차 개선

**구체적 과제 ②**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의 특성에 맞는 교정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마련

**구체적 과제 ①**

## 형사절차에서 여성, 장애인 등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법령 개정 및 절차 개선

**추진목표**

- 형사피의자, 피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형사절차의 본래적 임무에 입각하여 가정폭력·성폭력범죄 피해여성, 장애인, 아동,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절차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
- 현행 취약계층에 대한 수사지침과 관련 법령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구체화
- 사건관계인인 여성, 아동, 장애인, 외국인노동자가 형사절차에서 의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수사관행 개선

**현황**

수사절차에서 여성의 인권보호는 법개정과 수사지침 시행으로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 및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여기서 나아가 제도와 지침을 더 구체화하고 이를 수사매뉴얼로 발전시키는 것, 일선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과제라 할 수 있다.

2004년 1월 법무부는 국제인권기준, 그 동안의 검찰의 제도개선 결과(아래의 각종 대책 추진과정 참조) 및 세계인권선언기념주간에 개최된 〈수사와 인권〉 토론회의 토론내용을 반영하여 〈인권보호수사준칙〉을 개정하였다. 〈인권보호수사준칙〉은 각종 수사영역 또는 수사대상자별로 마련될 매뉴얼 정비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갈

것이다.

**1. 가정폭력처벌 및 예방대책 추진과정**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시행 (1998. 7. 1.)
- 〈가정폭력사건 수사지침〉 시행 (2000. 8. 30. 대검)
- 가정폭력 행위자·피해자 수사절차상 민간상담기관 연계방안 시달 (2000. 9. 16 대검찰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회 주 1-2회 서울지검의 지정된 장소에서 행위자와 피해자를 상담하고 검사는 그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사건처리
- 여성 관련 범죄 수사실무반 교육과정 신설(2001. 10. 22) : 법무연수원에 검찰(마약수사) 6-9급 공무원 대상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개정(2002. 12. 18. 개정, 2003. 3. 19. 시행)

**2. 성범죄피해자 보호대책 추진과정**

- 〈성범죄수사및공판여시피해자보호에관한지침〉 시행 (1999. 2. 23.)
-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체계 구축(2001.)
- 〈성매매관련범죄수사 및 공판시 유의사항〉 시행 (2002. 7.)
-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권리보장에 관한 연구 용역 (2003. 3.)
- 가정폭력·성폭력 및 성매매 관련 상담·보호시설 안내책자 전국 검찰청 배포(2003. 4.)
-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피해자 조사지침〉 시행 (2003. 6.)
- 〈아동조사에 대한 이해〉 책자 발간 (2004. 1.)

**3. 〈장애인을 위한 조사실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시행 (1997. 10. 1.)****4. 관계 법안 제·개정 상황**

-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영상물의 촬영·보전 및 영상물에 대한 증거능력 부여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2003. 11. 21.)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 제정안 국회 계류 중



### 5. 정책연구단위 구성 : 수사절차상 여성인권보호를 위한 태스크포스팀 구성(2003. 7. 1.)

- 법무부 공무원, 교수, 변호사, 의사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 25명(종합위원 9명, 각 분과별 자문위원 16명)이 참여하여, ① 가정폭력분과회의, ② 성폭력 분과회의, ③ 성매매 분과회의를 구성
- 현행 수사지침의 실효성 있는 이행방안 연구중

### | 추진계획 |

현행 수사지침과 인권보호지침들에 대한 이행 여부와 실효성 검토를 통해 형사절차에서 취약계층의 인권옹호방안을 여성, 아동,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대상별로 구체화한 매뉴얼작성 추진

#### 1.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

- 2004. 3. 인권보호수사준칙과 매뉴얼 개발팀 구성
- 2004. 6. 여성, 아동, 장애인, 외국인 관련 단체, 수사관계자로부터 기존 <인권보호수사준칙>에 대한 의견 수렴
- 2004. 9. 수사현장에서의 이행 여부와 실효성 조사  
외국의 각 영역별 인권보호수사매뉴얼 연구 및 참조  
인권보호수사 영역별 세부 매뉴얼 개발
- 2004. 12.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안과 영역별 매뉴얼 발표  
수사관계자 교육프로그램과 일정 수립

#### 2. 여성 인권옹호 방안

여성범죄 전담검사실 설치 : 인신매매, 성매매 등 여성 관련 범죄의 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해 소년부(강력부) 등에 전담검사실 설치 방안 강구

- 2004. 3. 서울지검, 동부·북부지청에서 시범 실시중인 여성전담검사제의 효과 분석
- 2004. 6. 6대 지검 여성전담검사제 확대 실시, 여성전용조사실 설치

성폭력사건 조사에 관한 세부지침 및 13세 미만 피해자 진술 녹음·녹화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지침(수사매뉴얼) 마련 (인권보호수사준칙 세부 매뉴얼 작성일정에 따라 진행)

### 3. 장애인 인권옹호 방안

- 2004. 6. 청각장애인 수사시 전국농아자협회에 설치된 수화통역센터 및 위협 회의 지방 각 지부에 소속된 통역인 활용시스템 구축
- 2004. 6. 신체장애인을 위한 출장조사 방안 마련
- 2004. 6. 시각장애인에 대한 대필, 대독, 점자서비스 확보 방안 마련
- 2004. 9. 수사단계에서 심신장애인에 대한 진술보조권 행사 방안 마련

관련 법령 개정시 해당 대상집단,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

검찰국,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여성 관련 전문인력그룹 및 인권과의 인권 관련 자문단의 업무협력을 통해 구체적이고 내실있는 취약계층 인권보장방안 마련

수사관행 및 절차 개선을 위해 수사관계자들에 대한 <인권보호수사준칙>, 각종 수사매뉴얼 및 수사중 인권보호 방안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강화

전국 검찰청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편의시설 설치

### | 추진부서 |

법무실, 검찰국, 여성정책담당관

## 구체적 과제 ②

### 여성·장애인 등 소수자의 특성에 맞는 교정시설 및 교화프로그램 마련

#### 추진목표

- 교정시설 내 여성 및 장애인의 처우와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 연구
- 교정시설 내 소수자들의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교육 및 교화,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현황

현재 형이 확정된 여성 기결수용자는 1,702명(전체 기결수용자의 4.6%, 2003. 12. 31. 현재)으로 청주여자교도소 등 36개 교정기관에 분산 수용되어 있다. 여성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도작업 및 교화프로그램 등은 남성수용자 대상 프로그램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상태다. 현재 시행중인 남성수용자 작업 직종은 32개인 반면 여성수용자 교도작업 직종은 봉제, 쇼핑백 제작 등 7개에 불과하다. 또 청주여자·여주·춘천교도소를 제외한 일선 교정시설에서는 여성 전용작업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여성수용자를 수용관리하고 있는 전국 36개 교정기관 중 80.5%에 해당하는 29개 기관이 30명 미만의 소수 인원을 분산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분산수용은 여성수용자에 대한 다양한 직종의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시행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또, 수용사동 운영에 필수적인 관용작업자 부족으로 교정기관들이 미결수용자 중 청원작업자를 상당수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정 역시 여성수용자 대상의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의 발전을 더디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 직원식당, 시동청소부 등 관용작업을 제외하고 여성수용자 전용작업장을 갖춘 기관은 청주여자(812평), 여주(50평), 춘천(30평) 등 3개 기관 뿐이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수용된 장애인들의 장애의 종류가 상이하고 장애인들이 각 교정기관에 분산수용되어 있어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2003년 군산교도소 내 장애인 전용직업훈련소가 설립되어 장애인 수형자 80명이 전용 수용동에서 생활하면서 6개월~1년 주기의 직업훈련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시설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군산교도소의 직업훈련소에서는 장애인 수용자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정해진 4종의 직업훈련(한식조리, 제과제빵, 양재, 컴퓨터)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 수용자 현황 (총 1,623명) (2003년 12월 현재)							
구분	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	기타
기결	1,169	649	135	46	28	217	94
미결	454	321	40	19	10	6	58

#### 추진계획

청주여자·여주·대구·대전교도소를 중심으로 여성수용자 직업훈련 직종을 다양화하는 한편 직업훈련 희망자를 이들 기관으로 이송  
2004년 직업훈련 계획인원 | 180명 (청주여자교도소 한식조리 등 6개 직종 130명, 여주교도소 정보기기운용 20명, 대구교도소 정보기기운용 10명, 대전교도소 피부미용 20명)

#### 여성수용자 전용작업장 확충(2003. 12. 23. “여성수용자 취업 활성화 방안” 수립)

- 2004. 1.~3. 소요예산 파악 및 예산 재배정
- 2004. 4.~9. 증·개축 공사 시행  
취업 수용자 선발 및 이송, 대구교도소 “여성수용자 전용작업장” 개축 완료, 운영
- 2004. 12. 청주여자교도소 “여성수용자 전용작업장(구외공장)” 개축 완료, 운영

### 장애인 수용자 작업장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 수용자가 일반 수용자와 함께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현실을 감안, 다수 장애인 수용자가 취업하는 작업장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하는 방안 추진

2004. 1.~ 3. 장애인 수용자 50명 이상 수용기관 7개 기관(안양, 대구, 부산, 청송, 청주, 광주, 군산교도소)을 대상으로 취업장별 취업인원, 취업장 위치, 편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 파악

2004. 4.~ 6. 2004년 중 설치 대상기관 최종 선정 및 소요예산 재배정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완료

2004. 7.~ 9. 장애인 편의시설 활용 및 문제점 파악, 보완

\* 2007년 준공(2004년 착공) 예정인 시화 직업훈련전담교도소에 여성 및 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직업훈련 시설 별도 마련 예정

### 출소 후 사회정착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 연구주체 및 부서 : 교정국 교화과
- 연구방향 : 현행 직업훈련 실태에 관한 분석을 통해 직업훈련과 교도작업의 체계적 연계, 직업훈련과 출소 후 효율적 취업 연계 등에 관한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연구방법
  - 학계 등의 선행 연구결과 참조 및 자문 : 교정학회, 혁신정책연구원, 각 대학 등
  - 유관기관, 단체와의 유기적 협조 : 노동부, 산업인력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과 여성 및 장애인단체의 의견 수렴
  - 훈련실태 분석 및 현장방문 조사

### 일정

2004. 1.~ 3. 학계, 유관기관 등의 전문가를 포함한 연구팀의 구성  
2004. 4.~ 9. 실태 분석, 직업훈련 및 교도작업 종합계획 수립  
2004. 9.~ 종합계획의 시행

### | 추진부서 |

교정국

# 5

##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구체적 과제 ①**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개선

**구체적 과제 ②** 부정부패사건 등에 대한 효율적 대처

**구체적 과제 ③** 인권옹호 및 공정한 수사관행 정착을 위한 검찰업무지침 정립

**구체적 과제 ④** 공안기능 조정 및 공안사건 처리기준 재정립

**구체적 과제 ⑤** 과학수사 정착을 위한 연구 강화



## 구체적 과제 ①

###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개선

2004. 12.

개정안 국회 제출

#### 추진부서 |

검찰국

#### 추진 목표

- 검찰 처분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하도록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제도를 정비

#### | 현황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재항고제도가 존재하나 내부의 시정제도로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헌법소원 또한 국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원의 견제방안인 재정신청제도의 대상범죄가 제한되어 있어 재정신청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런 비판들은 고소사건 처리과정에 외부인사의 참여 등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비판과 관련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통일적이고 일원화된 불복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 추진 계획 |

2003. 12.~ 2004. 3. 법무부정책위원회에서 재정신청 확대 및 항고·재항고제도 개선 논의  
※ 사법개혁위원회 논의시 일정 변경 가능
2004. 6. 법무부정책위원회 의결을 토대로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개선 방안 확정  
※ 재정신청제도, 항고·재항고제도, 헌법소원제도, 항고심사회제도(시범운영중)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2004. 6.~ 12.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작업 진행





## 구체적 과제 ②

### 부정부패사건 등에 대한 효율적 대처

#### 추진목표

- 고위공직자 및 권력형 비리 우선 척결로 사회지도층의 특권의식 청산
- 중하위 공직자 및 공기업 비리 엄단으로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 공적자금 및 공공기금 관련비리를 척결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경제구조 정착
- 지역토착비리 근절하여 범사회적 준법 풍토 확립
- 민간부분 비리에도 적극 대처하여 공정한 규칙이 지배하는 투명한 사회 구축

#### 현황

검찰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반부패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일선청에 반부패특별수사부(반)를 설치·운영하면서(1999. 9.~현재), 부패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 또, 검찰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공적자금비리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특별수사본부 내에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공적자금비리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2001. 12. 1.~현재).

검찰은 부패사범 단속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공적자금 수사를 위하여 「유관기관실무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고(2001. 12.), 국세청과의 공조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공조협의회는 중앙협의회 및 13개 지방협의회로 구성되어 있고, 중요 탈세정보 교환, 수사 및 범죄조사 상호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범죄정보 합동분석·지원반」을 두고 있다(2003. 10.).

부정부패사범 유형별 현황 (2003. 1~11.)					
구분	단속 인원	구속 인원	구분	단속 인원	구속 인원
합 계	3,979	1,452	수사	65	34
인사	56	28	세무	187	54
건축	460	79	교육	107	15
토지	70	34	병무	5	1
공사	264	96	금융	925	406
보건·환경	254	36	법조 주변	332	203
교통	49	15	납품	143	62
소방	2	1	사이비언론	23	16
노동	8	7	기 타	1,029	365

부정부패 사범 직급별 현황 (2003. 1~11.) ( )는 구속인원					
구 분	계	뇌물수수 뇌물공여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기 타
합 계	375(202)	236(150)	30(12)	35(12)	74(28)
선출직 (지방의회 의원 포함)	42(19)	20(12)	0(0)	0(0)	22(7)
3급 이상	26(17)	20(14)	1(1)	1(0)	4(2)
4급	16(9)	8(6)	2(2)	1(0)	5(1)
5급	53(22)	39(17)	4(1)	5(3)	5(1)
6급	72(37)	47(28)	3(1)	14(5)	8(3)
7급	60(37)	43(28)	5(2)	5(2)	7(5)
8급	56(28)	29(21)	12(3)	5(1)	10(3)
9급	5(2)	3(2)	1(0)	1(0)	0(0)
기타	45(31)	27(22)	2(2)	3(1)	13(6)

공적자금 관련 비리 유형별 처리 현황 (2001. 12. ~ 2003. 11.)			
부실기업 비리	금융기관 비리	공공기금 비리	합계
556(238)	327(245)	1,216(616)	2,099(1,099)

\* ( ) 구속 인원

\* 합동단속반은 2001. 12. ~ 2003. 10.까지 공적자금 회수 실적 761억원

검찰은 부패사범에 대한 전문수사역량의 강화를 위하여 특별수사지원과에 회계사, 컴퓨터정보처리기술자를 1명씩 확보하고 있고, 컴퓨터수사전문가양성과정, 기업회계실무교육, 국세공무원위탁교육, 계좌추적현장실무교육, 특별수사전담검사세미나 등 전문분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이외에 검찰은 검찰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특별수사모니터링제도를 시범실시하고 (2003. 9.~), 부정부패사범 신고체제 확립을 위하여 부정부패사범 신고자보상제를 시범실시하고 있다(2003. 8.~).

#### | 추진계획 |

#####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지속적 단속

- 공직비리에 대한 지속적 단속  
※ 고위공직자 및 정치권 관련 권리형 비리, 인·허가 공사발주, 건축 관련 등 취약분야 비리, 공직자의 이권개입, 공무상비밀누설, 선심성 예산집행 등 공직기강 해이행위 등
- 공적자금 및 공공기금 손실유발 비리 집중단속  
※ 부실기업주의 횡령, 재산은닉행위, 금융기관 임직원의 횡령·배임·금품수수 행위, 공무원들의 비리 룩인·방조 행위
- 민간분야 비리에 적극 대처

##### 부정부패 단속의 시스템적 전환 모색

- 단속의 측면에서 검은 돈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추적하는 상시적 감시체제를 구축
- 처벌의 측면에서도 새로운 국민의식에 대응하여 엄격한 가치기준 적용

##### 특별수사 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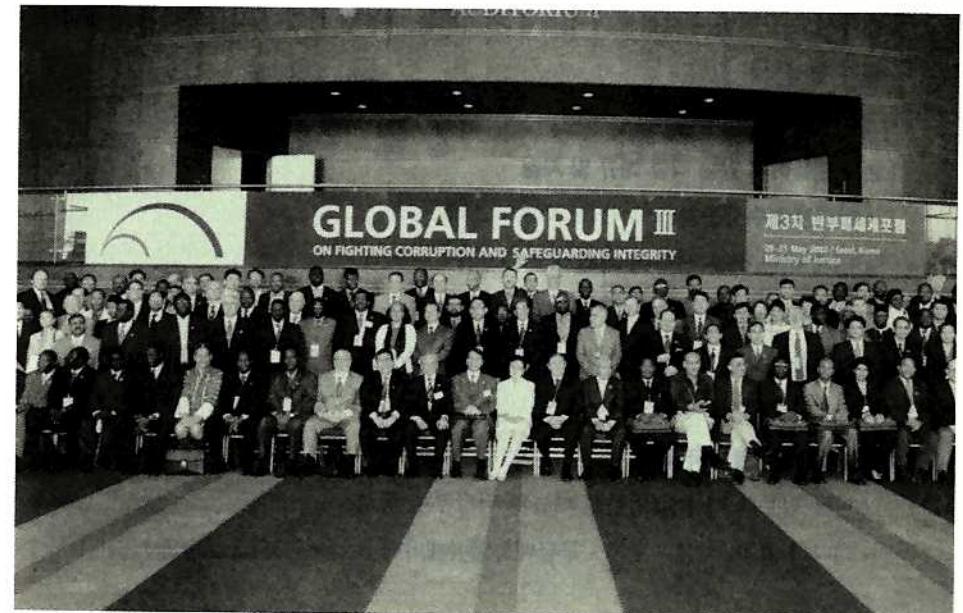
- 전문 수사역량 확보
- 전문 수사교육 확대
-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확대

##### 적극적인 범죄정보 수집활동 전개

- 부정부패사범 신고전화 활성화
- 비리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수사정보 및 구조적 비리에 대한 구체적 정보 적극 발굴
- 내부고발자 신분보장, 신고자 면책 및 보상금 지급제도 등을 도입하기 위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개정 추진(2004년 상반기)

#### | 추진부서 |

검찰국, 대검찰청



### 구체적 과제 ③

## 인권옹호 및 공정한 수사관행 정착을 위한 검찰업무지침 정립

### 추진 목표

- 검찰업무지침을 정립하여 예측 가능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공정한 수사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권 행사 방안을 도모

### 현황

현재 전담수사별, 연수기관별로 부분적인 업무 매뉴얼이나 예규가 있으나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법무·검찰 행정, 수사 및 신상에 관한 매뉴얼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법무부 및 검찰 내에서도 공정한 수사관행의 정착을 위해서는 매뉴얼 작업이 시급하다는 점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 현재 만들어져 있는 각종 예규 및 지침

- 인권보호수사준칙
-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자 조사지침
- 성범죄 수사 및 공판관여시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지침
- 가정폭력사건 수사지침, 성매매 관련 범죄 수사 및 공판시 유의사항 등

### 매뉴얼이 작성된 외국 사례

- 미국 법무성 매뉴얼(법무성 매뉴얼 담당부서 작성)
- 캐나다 경찰 「체포·조사·구금매뉴얼」(캐나다 Roger E. Salhany 등)

### 추진 계획

- 수사실무와 관련된 종합지침서이자 인권보호수사준칙 등에서 정한 인권기준을 반영한 실무규범으로서의 검찰업무지침서 작성 및 정비를 추진
- ※ 2003. 12. 검찰업무지침서 추진단 발족 완료
- 추진단 구성 : 총 70명 (검사 41명, 일반직 25명, 기능직 4명)
  - 수사, 공판(송무), 집행, 기획, 기타로 추진체계 분류

### 일정

- |               |                      |
|---------------|----------------------|
| 2004. 1.      | 추진단 관심(전문) 분야별 회의 개최 |
| 2004. 1.~ 3.  | 추진단 분야별 구체적 추진계획 수립  |
| 2004. 1.~ 6.  | 기존자료 검토              |
| 2004. 9.      | 검찰업무지침서 초안 확정        |
| 2004. 9.~ 12. | 내용 감수                |
| 2004. 12.     | 검찰업무지침서 최종안 확정       |
| 2005. 1.      | 법무부정책위원회 논의          |
| 2005. 1.~     | 시행 및 지속적 보완          |

### 추진부서

검찰국

#### 구체적 과제 ④

## 공안기능 조정 및 공안사건 처리기준 재정립

### 추진 목표

- 대북관계, 노사관계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공안기능 및 업무영역의 합리적 조정
-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공안사건 처리기준의 재정립 검토

### 현황

공안 관련 법무·검찰의 조직 및 담당업무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조직〉

-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3과
- 대검찰청 공안부 공안기획관실 및 공안 3개과
- 각 일선 검찰청의 공안부·공안담당부서 및 공안과

#### 〈담당업무〉

- 대공사건, 남북교류 관련 사건, 단체 관련 공안사건
- 선거사건, 학원·교육단체 관련 사건
- 노동·외사 관련 사건, 집단민원 등

그런데, 국내 사회환경, 노동환경 등 대내외의 변화로 인하여 공안사건의 유형별 사건비율이 나 각 유형별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남북관계의 변화를 고려한 국가 보안법의 신중한 적용으로 국가보안법위반사범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노사간 갈등에 대한 공정한 법집행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의 변화로 공안부 기능을 재조정하고 공안사건 처리기준을 다시 정립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공안사건 유형별 사건수 및 비율

(2003년도 사건수는 11.30. 기준)

연도유형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국가보안법위반사범	286(2.8%)	247(3.3%)	231(1.6%)	150(2.1%)
- 구속자수	- 130	- 126	- 131	- 84
집시법위반사범	1,532(14.8%)	1,582(21.0%)	1,334(9.1%)	1,390(19.3%)
- 구속자수	- 439(10)	- 1,207(12)	- 701(6)	- 1,077(10)
- 부당노동행위(구속자수)				
- 학업불법사범	10(0.1%)	92(1.3%)	39(0.3%)	8(0.1%)
- 노동관계법위반사범	1,855(18.0%)	2,171(28.8%)	1,985(13.6%)	1,611(22.3%)
(근로기준법 제외)				
- 기타사범	3,749(36.2%)	267(3.5%)	7,437(50.8%)	730(10.1%)
- 선거사범	2,903(28.1%)	3,169(42.1%)	3,596(24.6%)	3,330(46.1%)
<b>총 계</b>	<b>10,355</b>	<b>7,528</b>	<b>14,622</b>	<b>7,219</b>

### 추진 계획

공안정책 전반에 대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대검찰청에 “공안대책자문위원회”를 설치

### 공안기능 조정 및 공안사건 처리기준 연구

- |              |                                 |
|--------------|---------------------------------|
| 2004. 1.~ 3. | 연구 책임주체 선정                      |
| 2004. 4.~ 9. | 연구단위별 연구 진행, 방안 초안 확정           |
| 2004. 9.     | 내부보고 및 의견조회, 방안 확정, 법무부정책위원회 논의 |
| 2004. 10.~   |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 이행               |

### 추진부서

검찰국